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765
------	------

2024.04.3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3일, 이숙자 의원(찬성자 23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4.04.3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숙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서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있음.
- 우리보다 앞서 인구감소에 직면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자 장학금 등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산업전반의 쇠퇴를 방지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와 인식을 확산해 왔음.

- 이에 서울시가 실시하는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한 사업에 개발도상국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추가하여 미래의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고, 서울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한 사업 중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에 ‘장학금 지원’을 추가(안 제20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본문에서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도국’을 정식 용어인 ‘개발도상국’으로 바로잡고, 시장이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장학금 지원’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유학생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미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발의됨.

나. 개정안의 입법 배경

- 전세계적인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는 결과적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감으로 이어져 그 결과 산업계 전반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산업쇠퇴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장학금 등의 공적 개발원조(ODA)를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해외 각국의 유학생 유치경쟁 속에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유학생 30만명이라는 유치 목표를 수립함.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

- '23.8.16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 발표(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
 - 학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해외 유학생 30만명 유치 추진 목표
 - 대학협의체, 기업, 지자체 등이 함께 '해외 인재 유치 전략 TF'를 구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하에서 유학생 유치 확대 전략 마련

- 한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도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한 사업 중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범위에 장학금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미래산업(AI, 바이오, 로봇, 핀테크·블록체인)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임.

다.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장학금 지원 사항 추가(안 제20조)

- 안 제20조는 ‘개도국’ 을 ‘개발도상국’ 으로 하고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에 ‘장학금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공적개발원조의 활용)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생 략) 2. <u>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u> 3. 4. (생 략)	제20조(공적개발원조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u>개발도상국 ----- 지원(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u> 3. 4. (현행과 같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23년 기준 약 18만 2천명(서울 7만 7천명)으로, 2004년 기준 약 1만 7천명에 비해 약 11배 급증(980.3%)한 수준임.

〈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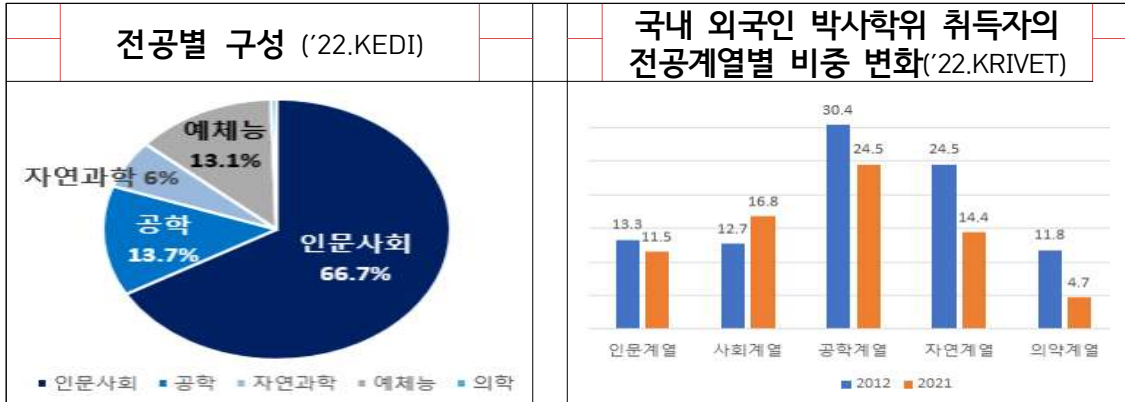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유학생수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유학생수	84,891	91,332	104,262	123,858	142,205	160,165	153,695	152,281	166,892	181,842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KEDI)

-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3분의 2가 어학, 경영학 등 인문사회 전공에 편중되어 있어 현재의

유학생 유입 상황이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미래산업 분야 전문 인력 확보로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임.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전공 현황 〉



* 출처 : 정부,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 이에 서울시는 개발도상국 유학생 대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개발도상국 우수 이공계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서울 국제 장학 프로그램인 「서울 테크 스칼러십」을 신설하였음.
- 그리고 서울시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ODA 개발도상국 국가장학기관¹⁾의 추천을 받아 이공계 학사 졸업생(예정자) 20명에게 1인당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 생활비, 건강보험료, 항공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러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으로 4억원을 확보한 상태임.

1) 개발도상국의 공인된 국가장학기관: 1. 말레이시아 MARA, 2. 인도네시아 IISMA, 3. 카자흐스탄 Bolashaq, 4. 우즈베키스탄 EL-YURTUMIDI

〈 장학금 지원 사항 〉

구분	지원 내용	지원 시기
등록금	서울시 50%+대학 50%	2월, 8월
생활비	100만원/월	매월 지정일
건강보험료	직전 월 건강보험료(실비)	
항공료	입국용 일반석 항공권(1회)	1회차 생활비 지급 시

-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울 미래산업 인재 확보와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6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이숙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박상혁, 박춘선,
신복자, 왕정순, 이경숙,
이병운, 이상욱, 이원형,
장태용,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최근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서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있음.
- 우리보다 앞서 인구감소에 직면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자 장학금 등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산업전반의 쇠퇴를 방지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와 인식을 확산해 왔음.
- 이에 서울시가 실시하는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한 사업에 개발도상국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추가하여 미래의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고, 서울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한 사업 중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에 '장학금 지원'을 추가(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개도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하고, “지원”을 “지원(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공적개발원조의 활용)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의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젝트 원조 2. <u>개도국</u>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3. 기술원조 4. 그 밖에 공적개발원조로 인정되는 사업 	<p>제20조(공적개발원조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개발도상국</u>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u>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은 개발동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에게 장학금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서울시 관련부서(국제교류과) 문의결과 현재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 서울시 기금운영계획

(단위: 천원)

회계구분	2024년 예산내역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서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 운영 = 400,000
	· 대학원 등록금 10,000,000원
	· 대학원 학비 136,000,000원
	· 입국 항공료 14,000,000원
	· 생활비 240,000,000원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